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4년 10월 10일

나. 제출자: 구미시장

다. 회부일자: 2024년 10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4년 10월 17일

제281회 구미시의회 임시회

제1차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질의, 토론, 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 설명자: 경제국장 김영철

나. 제안이유

- 구미시 노동자 및 시민들의 권리구제와 법률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취약노동자들의 노동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성 있는 기관에 위탁하여 분야별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시의회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

다. 주요내용

(가) 사무명칭 :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나) 위탁기간 : 2025. 1. 1. ~ 2027. 12. 31.(3년)

* 현행위탁 : 2022. 1. 1. ~ 2024. 12. 31.(3년)

(다) 위탁사무 :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 운영 전반

(1) 노동상담 및 일반법률상담 등 분야별 전문가 상담

(2) 노동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캠페인

(3) 기타 노동정보 제공, 지역 노동현황 실태조사 등

(라) 위탁시설 개요

(1) 위 치 : 구미시 산호대로 185(구미시근로자권익지원센터, 1층)

(2) 사 업 비 : 248백만원(도 30, 시 218)

(3) 규 모 : 건축연면적 1,293㎡(지하 1층, 지상 3층)

(4) 운영인력 : 5명(센터장 1, 실장 1, 부장 1, 차장 1, 노무사 1)

(마) 추진실적

(1) (2021년) 법률상담 : 3,016건, 노동교육 : 132명

(2) (2022년) 법률상담 : 2,813건, 노동교육 : 1,701명

(3) (2023년) 법률상담 : 3,691건, 노동교육 : 1,815명

(바) 소요예산 : 248,000천원 ※ 2025년 추계액 기준

(사)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후 수탁자 선정 심의

(1) 선정방법 : 민간위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2) 평가내용 : 수탁제안서를 통한 전문성, 책임능력 등 종합 심사

(3) 평가방법 : 수탁제안서 자료설명 및 질의응답을 통한 평가

※ 수탁기관의 재정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운영계획 등 심사

(4) 그 밖에 심의가 필요한 사항 : 해당없음

(아)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2024년 제3차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심의

(자) 향후 추진계획

(1) 수탁사업자 공개 모집 : 2024. 11.

(2) 위·수탁 선정심의위원회 개최 : 2024. 11.

(3) 위·수탁 협약 체결 : 2024. 12.

라. 참고사항

○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 「구미시 노동상담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위탁운영)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의회 동의)

3. 검토보고의 요지 - 전문위원 임 기 동

○ 본 동의안은

- 구미시 산호대로 185(구미시근로자권익지원센터, 1층)에 위치한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의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노동문제 예방을 위한 교육 등을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이 있는 기관에 노동법률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다만,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성과평가)에 의거 위탁 기간 만료 90일 전까지 위탁사업에 대한 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나, 성과평가 기한을 미준수한 사실이 있어, 앞으로 구미노동법률상담센터의 운영을 위탁함에 있어 관련부서의 철저한 지도·감독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소수의견의 요지

- 「구미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23조(성과평가) 및 구미시 민간위탁 관리지침에 의거 성과평가 결과를 인터넷 홈페이지의 '민간위탁제도' 게시판에 공개해야 하나 타 게시판에 게시하였으므로 시정하기 바람.
- 또한, 성과평가를 철저히 하는 등 업무 추진 시 관련 조례를 충분히 인지 후 준수하기 바람.

7. 심 사 결 과: 원안가결